성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백철현의원외 6인

2. 제안 사유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3.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안 제3조~제4조)
 나.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및 운영 등 규정 (안 제8조~제10조)
 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 제12조)
 마.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 자전거의 운영(안 제13조)
 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15. 7. 1 ~ 7. 5 (5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설정,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그 유지 관리 및 운영 등과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책추진에 소요 되는 재정지원, 군민자전거의 운영, 자전거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인 조례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